

조선시대 『資治通鑑』의 간행과 유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ation and Circulation of
Zizhitongjian in the Joseon Dynasty

오 정 환 (Oh, Jung-Hwan)*

송 일 기 (Song, Il-Gie)**

김 유 리 (Kim, Yu-Ri)***

◁ 목 차 ▷

- | | |
|----------------------|-----------------------|
| 1. 서 론 | 4.1 간행사실 분석 |
| 2. 「자치통감」의 편찬과 수용 | 4.2 현존본 분석 |
| 2.1 편찬배경 | 5.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유통 양상 |
| 2.2 수용과정 | 5.1 수요와 보급의 불균형 |
| 3. 초주갑인자본 「자치통감」의 간행 | 5.2 중국·일본본의 수입대체 |
| 3.1 세종의 사정전 훈의 | 6. 결 론 |
| 3.2 현존본 분석 | <참고문헌> |
| 4. 무신자본 「자치통감」의 간행 | |

< 초 록 >

이 연구는 조선시대 「자치통감」이 얼마나 간행되었고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지적 방법으로 고찰한 논고이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문헌기록과 책판목록을 통하여 간행기록과 책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고, 고서목록을 통하여 현존본을 조사하였다. 이를 근거로 소장기관을 방문하여 실물의 확인과 조사를 통해 기존 목록의 오류를 수정하고 정확한 서지목록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행사실이 확실한 기록은 3차례, 현존본은 초주갑인자본과 무신자본 2종이 밝혀졌다. 각종 책판목록에 기록된 「자치통감」 책판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존하는 목판본도 없었다. 간행사실과 책판의 부재는 조선시대 국내에서 간행된 「자치통감」에 의해 널리 유통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현존하는 「자치통감」 55건 중 조선본은 단지 19건에 불과하고, 그 외에 중국본은 24건, 일본본은 12건으로 밝혀져 부족한 수요는 외국본의 수입으로 충당한 사실을 보여준다.

要語: 사마광, 자치통감, 사정전훈의, 갑인자, 무신자

* 화봉문고 고서운영팀장(xsealt@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K연구원(yurifair@naver.com) (공동저자)

접수일: 2011년 12월 19일 최초심사일: 2011년 12월 19일 심사완료일: 2011년 12월 23일

<ABSTRACT>

This research is a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n how many the *Zizhitongjian* (資治通鑑) was published, and how it was circulated in the Joseon Dynasty. To satisfy the research purpose, this research identified the existence of publication records and woodblocks through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the Joseon Dynasty*(承政院日記) and the catalogs of woodblocks. Based on this investigation, an accurate bibliographic catalog was made and analyzed by examining the real *Zizhitongjian* and correcting errors in the catalog. As a result, this research found out that 3 of the publication records, books printed with Gabinja and Musinja types still remained. Woodblocks of *Zizhitongjian* recorded in the catalog of woodblocks were not found, and their woodblock prints do not exist, either. This reveals that *Zizhitongjian*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was not widely distributed around the country. Among the existing 55 volumes of *Zizhitongjian*, 19 were published in the Joseon, and 24 and 12 were published in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This result evidences that imported editions of *Zizhitongjian* supplemented the insufficient supply.

Key words: Sima Guang, *Zizhitongjian*, *Sajeongjeon Hunui*, Gabinja, Musinja

1. 서론

송나라 司馬光이 편찬한 「資治通鑑」은 周 威烈王부터 宋 건국 직전까지 1362년 역사를 하나로 관통하는 編年體 역사서이다. 「자치통감」이란 서명은 “통치에 자료가 되고 역대를 통하는 거울이 된다”는 의미로 역사에 내포된 여러 가지 기능 중 교훈적인 기능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치통감」은 이름에 걸맞게 역대 동아시아 군왕들의 제왕학 교재로 사용되었고, 집권 지배층들이 정치에 활용하는 필독서로 자리잡아왔다.

고려시대 「자치통감」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역대 왕들의 제왕학 교재로 사용되었고, 조선 건국 이후에는 더욱 중요한 역사서로 존중받으며 역대 왕에게 애독되었고 사대부들의 필독서였으며, 역사서 편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역사학계의 연구 결과가 보이고 있다.¹⁾ 하지만, 「자치통감」에 대한 서지적 연구나 간행과 유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실제 얼마나 간행되고 유통되어 읽혀졌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서지적 연구나 유통 연구를 하면서 조선시대 서적유통에 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 수입본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

이상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자치통감」 편찬 과정과 우리나라에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현존하는 初鑄甲寅字本과 戊申字本을 중심으로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등 문헌자료에 나타난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간행 사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시대에 국내에 수입된 외국본이 유통에 미친 영향도 함께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국내 「자치통감」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자치통감의 간행이 후대 학술사상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로의 전래와 조선시대 학술사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 통사적으로 정리한 권중달의 논문이 있다(權重達, 「資治通鑑對中韓學術之影響」, 《박사학위논문, 국립정치대학중국문학연구소, 1979》). 김일환은 「자치통감」이 조선 초기 역사학에 미친 영향을 세종조를 중심으로 논하였다(김일환,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이 朝鮮初期 歷史學에 미친 影響:世宗朝를 중심으로」, 『홍익사학』 제5집(1993), 55-88). 오항녕은 세종 때 「자치통감」 훈의본의 편찬과 주석 분석, 그 의미에 대해 논하였고(오항녕, “조선 세종대 「資治通鑑」 思政殿訓義」와 「資治通鑑綱目 思政殿訓義」의 편찬, 『태동고전연구』 제15집(1998), 27-58), 이것이 고려사 편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리하였다(오항녕, “조선 초기 「고려사」 개수에 관한 사학적 검토, 『태동고전연구』 제16집(1999), 13-42).

2. 「자치통감」의 편찬과 수용

2.1 편찬배경

「자치통감」을 편찬한 사마광은 북송 때 정치가이자 역사가로 자는 君實, 호는 文叟 또는 涑水先生, 시호는 文正으로 중국 북서부인 山西省 출신이다.²⁾ 王安石이 新法을 시행하자, 이에 반대하여 1070년 洛陽의 閑職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자치통감」은 주로 이 시기에 편찬되었다.

唐末 五代의 혼란을 통일한 송나라에서는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의 흐름이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고대부터 당나라까지 이어 내려오던 사회, 경제, 사상과 학문적 흐름이 五代十國이라는 혼란기를 겪으면서 대부분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시기를 唐宋變革期라 하는데, 중국사 시대구분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³⁾

송대에는 육조시대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강남지역의 경제력이 기존의 경제 중심지 강북을 능가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졌다. 송나라의 안정된 정치력과 풍부한 경제력은 대규모 문화 사업으로 이어진다.⁴⁾ 또 오대부터 실용화된 목판인쇄술은 이런 문화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요소였다.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송대에는 이전시대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당나라 때 불경의 번역이 마무리되고 智昇의 「開元釋教錄」 등 불경 목록이 편찬된 성과를 바탕으로 宋板大藏經이 판각되고, 도교경전의 총집합인 道藏도 여러 차례 편찬된다. 사학 분야에서도 한 왕조만 다루는 기존의 紀傳體

2) 황하 이북지역은 중국 정치의 전통적인 중심세력으로 기득권을 대표한다. 이들은 강남의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치권으로 진입하려는 세력과 격렬하게 정쟁을 벌이게 된다. 전자는 대체로 구법당이고, 후자는 대체로 신법당으로 사마광은 구법당의 대표적인 인물이다(권중달, 『資治通鑑 傳』 (서울: 삼화, 2010), 194-206).

3) 閔斗基, 「중국사시대구분론」 (서울: 창작과비평, 1991), 10-15.

4) 송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대규모 편찬사업이 벌였는데 대표적으로 2대 태종 때 「太平御覽」, 천 권과 「太平廣記」 오백 권, 3대 진종(眞宗) 때는 「冊府元龜」 천 권이 편찬되었다(서익환, “사마광의 역사사상과 「자치통감」 편찬,” (석사학위논문, 韓國外國語大學校, 2011), 11-13).

斷代史가 아닌, 역사의 흐름을 일관되게 살펴볼 수 있는 編年體 通史가 등장한다.

초기에 역사를 기록하던 방식은 공자의 『春秋』와 같이 사건을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였다. 하지만 사마천이 기전체라는 새롭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사기』를 편찬하면서, 역사서 편찬은 기전체가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전왕조의 역사를 다음 왕조가 기전체 사서로 편찬하는 것을 正史라 하는데, 이것은 왕조의 정통성 문제와 연계되어 매우 중시되었다. 기전체는 한 사건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고, 인물과 문화, 제도, 경제 분야의 풍부한 기록이 장점이다. 하지만 후대에는 官에서 史書를 편찬하게 되면서, 이러한 장점들이 사라지고 똑같은 사건이 여러 곳에 중복 기록되어 분량만 늘어나는 폐단이 생겨난다.

역대 왕조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역사서를 편찬하는 것은 단순히 서고에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치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역사서에 실린 풍부한 사례들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했기 때문에 군주가 제왕학을 배우는데 필수 교재였다. 하지만, 송나라 때 이르면 군주가 역사서를 읽으려 해도 그 많은 역사서를 모두 읽을 수가 없었다. 특히 같은 사건이 여러 곳에 중복 기록되어 분량이 많아지는 기전체의 특성 때문에 송대 이전의 정사만 해도 모두 17종 1,651권에 이르렀다.⁵⁾ 또 『사기』 이후에 정사들은 모두 단대사였기 때문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볼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사마광은 기존 역사서들에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기존의 방대하면서 복잡하고, 또 단편적으로 기록된 역사서들이 범람. 둘째, 군주가 통치에 활용할만한 통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현재의 사대부들은 어려운 역사를 배우려하지도 않고, 읽으려 해도 그들이 읽기 편한 통사가 존재하지 않았다.⁶⁾

사마광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년체 통사의 편찬을 계획했다. 송 英宗 4년(1067) 사마광은 개인적으로 편찬한 『通志』 8권을 영종에게 바쳤는데, 영종이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곧 편집국을 설치하여 秘閣에 소장된

5) 권중달, 『資治通鑑 傳』 (서울: 삼화, 2010), 38.

6) 閔斗基, 『중국의 역사인식(상)』 (서울: 창작과 비평, 1995), 344.

史料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편찬에 도움을 주었다. 영종을 이어 등극한 神宗은 『자치통감』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스스로 지은 序文을 내리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⁷⁾

『자치통감』은 19년이라는 오랜 작업 끝에 元豐 7년(1084) 294권으로 완성되었다.⁸⁾ 작업은 관련된 모든 사료를 모으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기전체 정사 이외에 많은 역사서를 참고로 하였다. 모은 사료는 年月의 차례대로 叢目을 만들고, 이를 가지고 草稿를 지었다.⁹⁾ 이 초고를 검토하여 長篇과 考異를 만드는 작업까지는 앞의 세 사람이 담당을 하였고, 사마광은 장편을 검토하고 刪定하는 작업을 하였다.¹⁰⁾ 역사서를 편찬할 때는 역사가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치통감』 편찬에 있어서 자료를 넣고 빼는 사마광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송대 사학의 특징 중 하나는 正統論과 義理論이다. 송나라 건국 초기에는 대체로 이러한 정통과 의리에 대한 논의에 대해 관대했었다. 그것은 건국 초기의 중신들이 대부분 전시대인 오대의 신하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마광이 살던 북송 후기에는 遼와 西夏 등 이민족과의 싸움이 잦아지면서 정통과 의리가 중요시되었다.¹¹⁾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저술하면서 깊이 고민한 부분도 바로 기년을 세우는 문제였다.¹²⁾ 사마광은 魏, 蜀, 吳 삼국 중 위를 정통으로 세우고, 논찬에서 자신은 正胤(정통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功業의 實在에 근거하여 저술한다고 말하였다.¹³⁾

『자치통감』은 주 위열왕이 핏의 三卿을 각기 제후로 인정한 시점인 BC 403년

7) 권중달, 『資治通鑑傳』 (서울: 삼화, 2010), 104-114.

8) 이 방대한 작업은 사마광을 필두로 많은 사람들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劉放, 劉恕, 范祖禹 세 사람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유만은 한나라, 유서는 삼국부터 수나라, 범조우는 당나라와 오대를 담당하였다(전목 저, 이운화 옮김, 『전목선생의 사학명저강의』 (서울: 신서원, 2006), 379)).

9) 李燾, 『續資治通鑑長編進表』.

10) 전목 저, 이운화 옮김, 『전목선생의 사학명저강의』 (서울: 신서원, 2006), 379.

11) 대표적인 사람이 『新唐書』와 『新五代史』를 저술한 歐陽脩이다.

12) 동시대에 여러 왕조가 난립할 경우 어느 왕조의 연호를 기년으로 삼아 서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왕조의 정통성과 연계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13) 閔斗基, 『중국의 역사인식(상)』 (서울: 창작과 비평, 1995), 321.

부터 後周의 世宗 때인 960년까지, 1362년의 오랜 시간을 다루고 있다. 사마광은 공자의 「춘추」를 계승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히 성인의 뒤를 바를 수 없었기 때문에 「춘추」가 끝나는 BC 481년이 아닌 BC 403년을 시작점으로 잡은 것이다.¹⁴⁾ 서술방식은 「춘추」의 여러 주석서 중 자료가 풍부하고 사실적인 서술을 한 「춘추좌씨전」을 따랐고 본문이 끝난 뒤에는 때때로 논찬형식의 사론을 덧붙였다. 「자치통감」에는 모두 218곳에 논찬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용한 것이 98곳이고, ‘臣光曰’을 두어 사마광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 125곳이다.¹⁵⁾ 본문 294권 이외에도 「사기」의 表를 본 판 「目錄」, 30권이 같이 간행되었다. 또 인용한 내용에 대한 고증인 「考異」, 30권이 부록으로 수록되었는데, 그 고증이 매우 정밀하고 자세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매우 중시되었다. 「자치통감」은 사료를 엄격히 판별하고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쓰여 졌을 뿐만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뛰어난 문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완성된 「자치통감」은 元祐 元年(1086) 黃庭堅과 張舜民 등이 교정을 보고, 항주에서 판각하여 원우 7년(1092) 첫 간행본이 나왔다.¹⁶⁾

2.2 수용과정

「자치통감」이 처음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고려시대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자치통감」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 이전에 전래된 것은 분명하다. 「高麗史」 명종 2년(1192)에는 이부상서 鄭國儉과 판비서성사 崔誥에게 명령하여 「增續資治通鑑」을 교정하고 각 주현에 판각을 명하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¹⁷⁾ 원나라는 역사서 중 민족주의

14) 大夫가 諸侯가 되는 이 사건은 실리가 명분을 제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때를 기점으로 중국은 尊王攘夷의 춘추시대와 富國強兵을 추구하는 전국시대로 구분된다. 때문에 사마광은 「자치통감」의 시작을 이 사건으로 삼았다.

15) 신승하, 「중국사학사」, (서울: 고려대학교, 2000), 178-179.

16) 북송 초간본은 전하지 않고, 남송 紹興 2년(1132) 兩浙東路茶鹽司에서 간행한 판본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남송 때 鄂州에서 북송본의 복각본이 간행되어 북송본의 모습을 알 수 있다(宋元版刻圖錄 卷3 元二).

적 색채가 약한 『자치통감』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영향으로 忠烈王, 忠宣王, 忠肅王 등이 신하들에게 『자치통감』을 많이 강론하게 하였다.¹⁸⁾

조선이 건국된 뒤에도 성리학의 영향으로 『자치통감』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성리학의 모태가 되는 송학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의리를 바탕으로 사학을 經學化시키는 ‘經史合一’ 또는 ‘經史體用’인데, 이는 경서에 나타나는 의리를 역사를 통해 실제 적용된 생생한 사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리학에서는 사물을 體와 用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경은 체가 되고 사는 용이 된다. 즉, 경은 이치의 근본이 되고 사는 이치의 작용이 되니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이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다.¹⁹⁾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는 즉위교서에서 인재를 뽑을 때 『사서』와 『오경』, 『통감』에 통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통달한 정도를 측정하여 높고 낮음의 등급을 정하라고 명시했다.²⁰⁾ 태종 원년(1401)에는 영의정부사 李舒 등이 명나라에서 돌아와 『大學衍義』, 『通鑑輯覽』, 『事林廣記』 각 1부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²¹⁾ 태종 스스로도 經書와 『通鑑』, 『宋史』, 『元史』, 『三國史』를 읽고 신하들과 의견을 나누었다.²²⁾ 이후 『자치통감』은 조선시대 국왕의 經筵과 왕세자의 書筵의 교재로 많이 사용되었다.²³⁾ 특히 세종은 『자치통감』을 강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석 작업으로 사정전에서 訓義를 하게 하였다.

17) 『高麗史』 卷20, 『증보문헌비고』 권241에는 「증속자치통감」이 「자치통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권중달은 고려사의 기록은 연자(衍字)라고 하였다(권중달, 『資治通鑑傳』, (서울: 삼화, 2010), 678-679).

18) 충렬왕: 『高麗史』 卷30, 충선왕: 『高麗史』 卷34, 충숙왕: 『高麗史』 卷109.

19) 이런 사상은 북송의 程頤와 范祖禹로부터 시작되어 胡寅의 『讀史管見』을 거쳐 남송 주자의 『資治通鑑綱目』에 이르러 확고히 정립되었다(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2), 404-405).

20) 『太祖實錄』 卷1, 1年(1392 壬申) 7月 28日 太祖卽位敎書.

21) 『太宗實錄』 卷2, 1年(1403 辛巳) 12月 9日 癸亥.

22) 『太宗實錄』 卷34, 17年(1417 丁酉) 12月 4日 乙酉.

23)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의 경연기록을 보면 세종, 세조, 현종, 숙종, 영조 때 경연과 서연에서 『자치통감』이 진강된 기록이 다른 왕들에 비해 많다.

3. 초주갑인자본 「자치통감」의 간행

3.1 세종의 사정전 훈의

조선시대에 「자치통감」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세종은 매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세종 2년(1420) 세종은 경연에서 「자치통감」을 강론하라고 했지만, 권질이 너무 많다는 신하들의 반대로 대신 「近思錄」을 강론하게 했고,²⁴⁾ 그 다음해에는 「자치통감강목」을 강론하였다.²⁵⁾

세종 7년(1425) 세종은 尹淮에게 “신하들에게 「左傳」·「史記」·「漢書」·「綱目」·「宋鑑」에 기록된 옛 일을 물으니, 다 모른다고 말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²⁶⁾ 신하들의 낮은 역사의식에 대한 세종의 불만은 세종 치세 내내 지속된 「고려사」 편수과정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²⁷⁾ 세종이 신하들의 역사의식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세종은 단순히 불만만 표시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역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정전훈의 편찬이다.

세종 16년(1434) 세종은 윤희 등 중신들과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 「원위」, 「집람」, 「석의」 등의 주석을 참고로 사정전훈의 편찬에 착수한다.²⁸⁾ 훈의 편찬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세종 17년(1435) 3월 세종은 호삼성의 「음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다. 세종은 일단 훈의 작업을 중단하고 「음주」를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우선 민가에 소장된 「음주」를 바치면 재물과 벼슬을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24) 「世宗實錄」卷2, 卽位年(1418 戊戌) 11月 13日 己未.

25) 「世宗實錄」卷7, 2年(1420 庚子) 閏1月 1日 庚午.

26) 「世宗實錄」卷30, 7年(1425 乙巳) 11월 29일 甲子.

27) 1418년 세종은 경연에서 柳寬과 卞季良을 불러 전대의 역사인 「고려사」를 개수하도록 지시한다. 이렇게 시작된 고려사의 개수작업은 모두 4차례의 개수를 거치며 세종이 세상을 뜬 다음해인 문종 1년(1451)에 완성되어 간행된다. 4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치는 동안 直書와 改書 문제, 기전체와 편년체의 방식에 대한 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때마다 기존의 작업된 「고려사」를 계속적으로 수정했다.

28) 「世宗實錄」卷64, 16年(1434 甲寅) 6月 26日 辛未.

사신을 보내 「음주」를 구입하도록 하였다.²⁹⁾ 「음주」의 주석을 참고로 내용을 수정한 뒤 세종 17년 6월 드디어 사정전훈의 「자치통감」(이하 「통감훈의」)이 완성되었다.

사정전훈의가 완성된 다음 해인 세종 18년(1436) 2월 「통감훈의」를 인출하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³⁰⁾ 세종은 갑인자가 구조되는 세종 16년(1434)에 종이 30만권을 준비하여 5~6백질의 「통감훈의」를 인출하여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 또 권질이 많은 「통감훈의」 인출에 대비하여 종지와 먹을 준비하게 하고 종이를 여러 읍에서 나누어 만들게 하였다. 그리고 현전본의 지질에 보이는 것처럼 종이 가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과 달리 썩대와 밀, 보릿짚, 대껍질 등 구하기 쉬운 재료로 이를 닥나무에 섞어서 종이를 만들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³¹⁾

5~6백질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점에서 활자본이 아니라 목판본의 존재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조선시대 활자본은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인출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빠른 인쇄가 어렵기 때문에 서책을 대량으로 간행할 때에는 목판본을 이용하였다. 「통감훈의」는 294권 100책으로 처음 간행되었는데, 이것을 500질만 인출한다고 해도 50,000책을 인쇄해야하는 거대한 출판 사업이다. 따라서 세종은 목판본을 만들어 「통감훈의」를 널리 보급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후 목판본에 대한 간행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세종의 의도가 실제로 실현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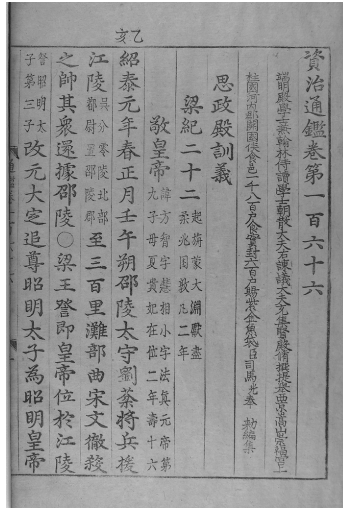
29) 『世宗實錄』 卷67, 17年(1435 乙卯) 3月 10日 壬午.

30) 『世宗實錄』 卷71, 18年(1436 丙辰) 2月 27日 癸亥.

31) 『世宗實錄』 卷65, 16年(1434 甲寅) 7月 16日 辛卯과 17日 壬辰.

32) 세종 26년 다른 책들과 더불어 「통감훈의」를 청주향교에 하사하여 생도들로 하여금 익히게 했지만, 판중에 대한 언급이 없어 활자본인지 목판본인지는 알 수 없다(『世宗實錄』 卷105, 26年(1444 甲子) 8月 14日 庚申).

3.2 현존본 분석



<그림 1> 초주갑인자본 「자치통감」

현존하는 초주갑인자본은 세종 18년(1436) 2월 27일 주자소에서 인출하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436년 간행된 판본으로 볼 수 있다.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된 권285에는 丁巳(1437) 「宣賜之記」라는 內賜印과 內賜記가 남아 있어 1437년에도頒賜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 대상은 화봉문고에서 소장된 초주갑인자본 「자치통감」(권164~167)을 대상으로 하였다.³³⁾

邊欄은 사주단변이고 행자수는 10행 19자, 魚尾는 下向黑魚尾로 세종 때 간행된 전형적인 초주갑인자본이다. 권수제는 「자치통감」, 판심제는 「통감」이다. 둘째와 셋째 행에 보이는 저자표시는 독립된 개별 활자로 인쇄한 것이 아니라 활자판에 목각판을 조립하여 인출하였다. 네 번째 줄에는 사정전훈의인 것을 명시하였고 주는 小字雙行이다.

33) 초주갑인자본은 이외에도 보물 1281호로 지정된 개인소장본을 비롯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규장각, 그리고 일부 개인소장본이 남아있지만 모두 殘本이다.

현존하는 초주갑인자본은 모두 활자본이고, 목판본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세종이 보급하려 했던 『자치통감』은 계획만큼 제대로 간행이 안됐거나, 간행했더라도 수량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무신자본 『자치통감』의 간행

4.1 간행사실 분석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이후 『자치통감』의 간행과 관련된 기록은 여러 차례가 있다. 우선 中宗 10년(1515) 『朱文公集』 등의 문집과 『자치통감(호삼성주)』를 비롯한 역사책을 인출하는데, 『자치통감』은 중국본(唐本)이 글자와 크기가 적당하니 그것으로 동활자를 다시 주조하라 명하였다.³⁴⁾ 다음 해인 중종 11년(1516) 1월 22일 鑄字都監을 설치하고 활자를 주조하였는데 그 해의 간지를 따라 丙子字라 일컫는다.³⁵⁾ 宣祖 8년(1575)에는 선조가 『자치통감』 인출작업의 진행에 대해 물었는데, 校書館에서 다른 작업이 바빠 『자치통감』의 件數를 아직 入啓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³⁶⁾ 하지만 위의 기록들은 이후 간행이 완료되었다는 기록이나 현존본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초주갑인자본 이후 확실하게 간행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숙종 때 간행된 무신자본이다. 무신자본 『자치통감』은 세종 때 간행된 초주갑인자본의 重刊本이

34) 『中宗實錄』 卷23, 10年(1515 乙亥) 11月 4日 丙戌.

35) 『中宗實錄』 卷23, 11年(1516 丙子) 1月 22日 甲辰. 그러나, 5월 들어 심한 가뭄이 발생해서 주자도감을 비롯한 급하지 않은 일을 담당하는 관청들은 없어지고, 그 이후 인출 기록과 현존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자자로 실제 인출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中宗實錄』 卷23, 11年(1516 丙子) 5月 20日 庚子).

36) 『宣祖實錄』 卷9, 8年(1575 乙亥) 3月 7日. 이 기록의 바로 앞의 해인 선조 7년(1574)에 승지(承旨) 신응시(辛應時)가 원추의 『통감기사본말』 인출을 요청해서 허락을 받은 일이 있는데 선조 8년의 『자치통감』을 『통감기사본말』로 보는 견해도 있다(권중달, 『資治通鑑傳』 (서울: 삼화, 2010), 755).

다. 현재 전하는 무신자본은 발문이 없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간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이 과정을 복원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문헌기록에 의존해야 한다. 무신자본 「자치통감」에 관련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숙종 34년(1708) 홍문관 부교리 李正臣의 상소로 시작된다. 이후 숙종 치세 후반부에 걸쳐 여러 차례 실록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 기록들을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무신자본의 관련기록

시기	주청자	내용
숙종 34. 12. 30.	李正臣	세종 때 만든 사정전훈의가 병화에 산실되어 남은 것이 19권에 불과하니, 경상도 땅에 남아 있는 인본을 모아 완질을 謄寫하자고 청하다. ³⁷⁾
숙종 37. 1. 4.	李正臣	경상도에 사정전훈의가 전질이 남아 있으니, 이를 거둬 호남, 영남 양도의 방백에게 분부하여 반반씩 나누어 새기게 하고 이를 인쇄하자고 청하다. ³⁸⁾
숙종 37. 6. 23.	徐宗泰 柳鳳輝	사정전훈의가 올라왔으나, 5책이 산실되어 인쇄를 못하고 후에 임금이 부제학 유봉휘의 의견으로 결실된 5책을 당관 고주로 보충해 넣다. ³⁹⁾

이정신은 세종이 직접 수정한 「통감훈의」가 잦은 兵火로 홍문관에 남아 있는 것이 19권에 불과한데 경상도 永川 고 대사간 박승임의 후손 집과 禮安 金嶽의 집에 완질이 간직되어 있으니 그 책을 거두어 베껴 완질로 만들고 홍문관과 시강원에 두어 경연과 서연에 대비하자고 청하였다.⁴⁰⁾ 이정신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3년 뒤인 숙종 37년(1711) 이정신은 같은 내용의 상소를 다시 올린다. 세종 대왕이 만든 「통감훈의」가 잦은 병란에 거의 다 산실되었는데 예안 金濂의 집에 완질이 소장되어 있으니, 책을 거두어 호남과 영남의 방백에게 반반씩 나누어

37) 『肅宗實錄』 卷46, 34年(1708 戊子) 12月 30日 壬申.

38) 『肅宗實錄』 卷50, 37年(1711 辛卯) 1月 4日 癸巳.

39) 『肅宗實錄』 卷50, 37年(1711 辛卯) 6月 23日 辛巳.

40) 이정신이 말한 병화는 왜란이나 호란 등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인다.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왕실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의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도난당했기 때문이다. 또 인조반정 이후 이괄의 난 때도 창덕궁과 창경궁이 불타 많은 서적들이 소실되었다. 효종 8년(1657)에 李萬雄이 홍문관에 보관된 「통감훈의」가 단 한질 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낙권이 있어 권수가 많지 않았으니 등서를 하여 보존하자는 의견을 올렸는데, 숙종 때 기록을 보면 이만웅의 의견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기게 하자는 의견이었다.⁴¹⁾ 또 34년 상소에는 완질을 등서하자고 했는데, 37년 상소문에는 영호남에서 나누어 목판에 새겨 분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해 6월 예안 사인 김집의 집에 소장된 『통감훈의』를 이송해 왔으나, 완질이 아니라 5책이 부족하였다. 홍문관에서는 한 질이 안 되는 책을 새겨 인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領事 徐宗泰에게 알렸다. 서종태는 “비록 5책이 빠졌지만 『자치통감』에 本書를 보충해 넣어, 한가한 시간에 보시는 귀한 서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兩南(경상도와 전라도)에 재해가 있으니 앞날의 형편을 보아 나누어 간행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합니다”하고 아뢰었다. 뒤에 숙종은 부제학 柳鳳輝의 의견에 따라 빠진 5책을 唐板(중국본)의 古註로 보충해 넣도록 하였다. 따라서 숙종 37년 만들어진 『자치통감』은 완전한 『통감훈의』가 아니고 294권 중 5책은 중국본을 補寫해 넣은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만을 보아선 무신자본이 언제 간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후의 간행 과정은 『승정원일기』의 숙종과 영조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무신자본의 간행과정

시기	주청자	내용
숙종 38. 3. 7.	吳命恒	『통감훈의』를 속히 간행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⁴²⁾
숙종 38. 3. 9.	南至薰	교서관에 분부해서 『통감훈의』를 속히 인출하게 하라는 홍문관의 의견을 올리다. ⁴³⁾
숙종 43. 12. 10.	校書館	『삼국사기』, 『동문선』, 『자치통감』, 『운부군옥』을 인출하는데 고생한 최창수 등에게 시상할 것을 건의하는 교서관의 의견을 올리다. ⁴⁴⁾
영조 13. 12. 22.	朴師洙	자치통감 5권을 인출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비록 폐단이 있지만 전례에 따라 卜定(비정규 세금)을 三南에 인출지로 받는 것이 어떠한가? ⁴⁵⁾

41) 숙종 34년의 상소와 다른 점은 완질의 수장처로 예안 사인 김집의 ‘濼’을 지목하고 있는데 이후 계속 김집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34년 상소의 ‘金岱’라는 인명은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42) 『承政院日記』 肅宗 38年 3月 7日 庚寅.

43) 『承政院日記』 肅宗 38年 3月 9日 壬辰.

44) 『承政院日記』 肅宗 43年 12月 10日 庚寅.

45) 『承政院日記』 英祖 13年 12月 22日 乙巳.

시기	주청자	내용
영조 14. 5. 7.	宋眞明	어람용 한건은 貼冊紙를 사용하고, 네 건은 복정으로 양남에 부과하자.
	宋寅明	이 책은 전일 인출하여 반사한 것이 오래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다시 인출하는가? ⁴⁶⁾
영조 14. 10. 10.	宋眞明	예전의 간행은 모두 100권으로 계사년(1713)에 시작하여 병인년(1716)에 끝남. 지금 옥당에 5건이 남았고 7건은 수장처를 알 수 없다.
	徐宗玉	복정은 거대한 폐단이 있어 양남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불가하다. ⁴⁷⁾
영조 14. 10. 17.	徐宗玉	추울 때 인출하는 것은 어려우니 내년 봄과 여름 사이에 인출하자고 고함. ⁴⁸⁾
영조 32. 1. 17.	任瑋	『통감훈의』에 누락된 것이 많아 애석하다하니 영조가 홍문관에 명하여 영남에 탐문케 하다. ⁴⁹⁾
영조 32. 4. 28.	洪準海	영남에 『통감훈의』 완질이 있어 올려 보내 누락된 것을 보충케 하였는데 지금 보내온 것을 보니 『자치통감』이 아니라 『발명강목』이다. ⁵⁰⁾

기록을 보면 숙종 38년(1712)년에도 『자치통감』의 간행이 안 되어 여러 신하들이 강목의 인출을 재촉하였다. 하지만, 실제 간행은 5년이 지난 숙종 43년(1717) 직전에 인출되었다. 영조 때 기록에는 더 정확한 간행시기가 나온다. 영조 14년(1738) 호조판서 宋眞明이 입시하여 홍문관에서 올린 『자치통감』 5건을 인출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인쇄할 종이를 조달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에 우의정 송인명이 『자치통감』을 인출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인출하자는 이유에 대해 묻는다. 송진명은 丙申年間 翰苑(한림원, 예문관)에 있을 때 삼십 여 건을 인출하여 반사하고 경연을 위해 12건을 홍문관에 두었으나 지금은 단지 5건만 남았다고 답하였다. 영조 14년(1738) 10월 10일 기사에는 숙종 때 『자치통감』의 인출이 계사년(1713)에 시작하여 병신년(1716)에 마쳤다는 명확한 기록이 있다. 인출된 『자치통감』은 100권의 책으로 경연을 위하여 12건을 홍문관에 두었으나 지금은 단지 5건만 남아 있고 7건의 행방을 알지 못하니 심히 괴이하다고 적고 있다.⁵¹⁾

46) 『承政院日記』 英祖 14年 5月 7日 戊午.

47) 『承政院日記』 英祖 14年 10月 10日 己丑.

48) 『承政院日記』 英祖 14年 10月 17日 丙申.

49) 『承政院日記』 英祖 32年 1月 17日 乙酉.

50) 『承政院日記』 英祖 32年 4月 28日 乙丑.

51) 이때의 상황은 비변사등록에 좀 더 자세히 나온다. 모두 30여건을 인출하여 17건을 반사하

영조 32년(1756) 1월 17일에는 승지 任瑋가 『통감훈의』는 빠진 것이 많아 애석하다고 고하니, 영조가 홍문관에 경상도 지역을 탐문하라고 명하였다. 또 영조 32년 4월 28일에는 洪準海가 경상도에 완질이 있다고 했던 판본을 道臣(관찰사)에게 하여금 올려 보내게 해서 지금 살펴보니 『자치통감』이 아니라 『강목발명』이라고 하였다. 효종 8년(1657) 이만웅이 홍문관에 낙질로 소장된 『통감훈의』에 대해 상소를 올린 뒤 100년이 흐른 영조 32년(1756)까지도 조선의 독자적 주석인 『통감훈의』는 완질로 복원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형태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효종부터 숙종을 거쳐 영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은 임진왜란과 양 호란 이후 무너진 조선의 서책 출판체제와 보관체제를 잘 보여주는 기록이다.

4.2 현존본 분석

현존하는 무신자본 『자치통감』의 마지막에는 鑄字事實과 正統元年(1436)八月日印出이라는 舊刊記가 남아있어 초주갑인자본의 중간본임을 알 수 있다. 내용과 행자수는 초주갑인자본과 동일하지만, 변란과 어미는 차이가 있다.⁵²⁾ 초주갑인자본과 달리 무신자본은 294권 100책을 완질로 소장한 기관이 있어 세종 때 간행된 초주갑인자본 『통감훈의』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완질이 아니라 낙질인 무신자본도 각 기관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현존본 대다수는 이 무신자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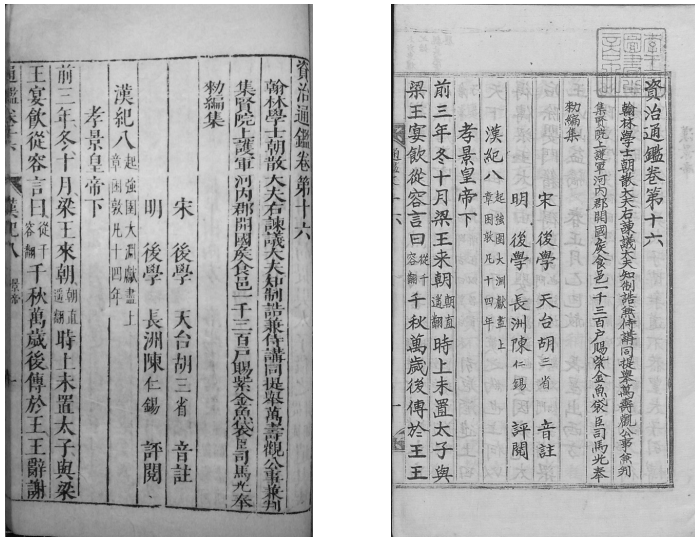
문헌기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신자본은 숙종과 영조 때 최소 2차례 이상 인출되었다. 현존하는 무신자본을 살펴보면 각각의 무신자본은 내용이나 형태가 동일하고 중앙에서 활자로 인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판본적 특성이 없다. 현존하는 무신자본 중 몇몇은 일부 보사된 부분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무신자본을 甲, 乙, 丙으로 나누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고 경연을 위해 12권을 남겨두었다. “其時印出三十餘件, 頒賜爲十七件, 經筵件爲十二件云, 欲更查實後, 稟定處之矣”(備邊司謄錄 10集 英祖 14年 戊午五月初九日).
52) 초주갑인자본: 사주단변, 상하향흑어미. 무신자본: 좌우쌍변, 내향2엽화문어미.

<표 3> 무신자 甲, 乙, 丙本の 보사부분

板本	補寫部分	所藏處
戊申字	甲	권16~18, 권259~261
	乙	권16 앞 3장
	丙	없음

무신자甲으로 명명한 장서각 소장본은 모두 294권 100책이고, 이 중 권16~18과 권259~261의 2책 6권이 필사본이다. 내용을 보면 사정전훈의가 아니고 중국본을 필사하였다. 저본이 된 판본은 天啓 5년(1625) 서문이 있는 중국 목판본으로 두 책의 권16 권수제 부분을 비교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중국본과 장서각본 자치통감 권16 사진

53) 규장각 소장 무신자乙本은 완질이 아니어서, 권259~261이 필사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왼쪽의 중국본은 10행 20자 註雙行이고 上下向黑魚尾이다.⁵⁴⁾ 반면 무신자甲본은 무신자본의 어미인 內向2葉花紋魚尾의 판식을 인쇄하여, 그 위에 본문과 같이 10행 19자로 행자수를 맞추어 필사를 하였다. 내용뿐만 아니라 글씨체까지도 무신자본과 확연히 구분되는 중국본의 印書體를 그대로 필사해 넣어 한 눈에 무신자본과 구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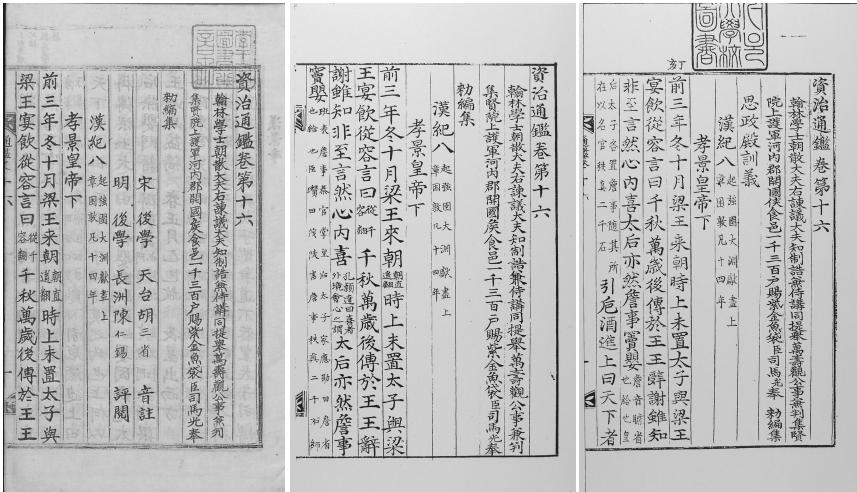
조선시대는 책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보사해 넣는 경우가 간혹 보인다. 특히 「자치통감」 같은 거질의 책들은 완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날권으로 구매하고 빠진 부분의 서책은 빌려서 필사본으로 만들어 독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무신자甲본의 경우 필사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숙종 때 간행된 간본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다만, 무신자본과 동일한 어미와 변란의 목판으로 서사용지를 찍어내어 그 위에 필사하였고, 또 실록의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무신자본이 아니라 중국본을 필사해 넣었다는 사실에서 숙종 때 간행된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런 가정은 규장각에 소장된 무신자乙본에서 좀 더 명확해진다.

무신자乙로 명명한 규장각본은 권16~18 부분이 무신자로 인출되었다. 보사된 부분은 권16 권수제부터 3장 정도의 분량이다. 무신자甲본과 같이 사정전훈의가 아니라 호삼성 음주를 필사한 것이지만, 필체는 중국본의 필체가 아니라 무신자본과 유사한 필체로 되어 있는 것이 무신자甲본과 다른 점이다. 무신자乙본을 경연에서 사용되던 것으로 권수제 하단에 侍講院 인장이 있다.⁵⁵⁾ 경연에서 사용되던 책에 보사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무신자乙본의 간행연대는 「통감훈의」가 복원이 안 된 영조 32년(1756) 이전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에는 294권 100책 전부가 무신자로 간행된 무신자丙본이 현존하고 있어 1756년 이후 빠졌던 부분이 모두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4) 이와 동일한 판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전남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55) 무신자甲본과 乙본은 각기 다른 부분을 보사한 것이 아니라 같은 부분 즉, 권16을 필사한 것이기 때문에 甲본이 간행된 뒤에 나머지 부분을 찾아 乙본이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무신자甲(藏書閣)

무신자乙(奎7529)

무신자丙(奎7526)

<그림 3> 무신자본의 권16 비교

<그림 3>은 무신자 甲, 乙, 丙 本의 권 16부분을 대조한 것이다. 같은 무신자본이지만, 이 부분만은 각기 다른 주석과 서체로 쓰여 졌다. 무신자甲을 보면 10행 19자로 무신자본과 행자수는 같지만,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宋 後學 天台胡三省 音註, 明 後學 長洲陳仁錫 評閱’이라고 저자사항이 표시되어 있어 중국본을 그대로 필사했음을 보여준다. 글씨도 중국본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서체로 쓰여 졌다. 무신자乙본은 甲본과 달리 호삼성과 진인석의 이름을 넣지 않았고 글씨체도 인서체가 아니라 무신자에 가깝도록 썼다.

그러나, 내용을 읽어보면 甲본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호삼성 「음주」를 필사해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무신자丙은 甲, 乙과 다르게 필사된 부분이 없이 완전한 무신자로 인출되었다. 주석도 사정전훈의로 명시하고 있는 무신자본 「통감훈의」이다. 영조 32년 이후에도 「통감훈의」를 완전히 복원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고 결국 완전한 「통감훈의」가 복원되어 무신자로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신자본 「통감훈의」는 장서각과 규장각 이외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완질은 아니지만 고려대학교 도서관에도 무신자본 「통감훈의」가

두 질이 소장되어 있다.⁵⁶⁾ 두 기관의 소장본 모두 권16 부분이 무신자로 인출된 무신자丙본이다.

5.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유통 양상

5.1 수요와 보급의 불균형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간행기록과 현존본을 살펴본 결과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간행은 활자본 위주였다. 조선시대 중앙의 출판정책은 활자본을 인쇄하여 경연이나 반사에 사용하거나 존경각이나 사고에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실제 독서에 사용되는 책들은 이를 각 지방의 監營으로 보내 목판으로 판각하게 하여 이를 보급하였다. 「자치통감」이 얼마나 많이 유통되었는지 알아보려면 이런 책판의 소재를 알아보아야 한다.

明宗 9년(1554) 魚叔權이 편찬한 「故事撮要」는 이후 12번이나 개정판이 나온 대표적인 조선시대 백과사전으로 이 책의 상권에는 교서관 간행도서를 중심으로 한 書冊市准이 수록되어 있고, 하권 八道程途 부분에는 해당 지역에 소장된 책판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서책 간행과 유통을 조사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

고사촬요에는 「자치통감」이라는 서명의 책판은 없지만, 「통감」은 順天, 醴泉, 靑道 3곳에 기록되어 있다.⁵⁷⁾ 일반적으로 「통감」은 「자치통감」의 축약서명으로 사용되지만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에는 「통감절요」의 축약서명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통감」이라는 서명일 경우 내용이나 책 수를 통해 「자치통감」인지 「통감절요」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6) 고려대 만송문고본은 294권 82책 중 76책이고, 육당문고본은 294권 100책 중 96책이 현존하고 있다.

57) 선조 1년(1568) 을해자본 「고사촬요」에는 청도와 순천에만 「통감」 책판이 기록되어 있다. 선조 18년(1585) 목판본 「고사촬요」에서는 예천, 청도, 순천 세 곳에 「통감」 책판이 기록되어 있다(鄭亨愚, 尹炳泰, 「韓國冊版目錄總攬」(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454).

「고사촬요」에는 「통감」이 ‘紙三十卷七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59권의 「통감 책목」이 ‘紙一百六十卷’으로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사촬요」에 기록된 「통감」은 「자치통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근거는 다른 책판목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⁵⁸⁾ 고사촬요 이외의 다른 책판목록에 수록된 「통감」에 대한 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책판목록에 「통감」이 15책 또는 15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통감절요」가 50권 15책으로 구성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각종 책판목록에 수록된 「통감」은 「자치통감」이 아니라 「통감절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유통 현황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는 서원문고목록이다. 1969년 국회도서관에서 펴낸 「李朝書院文庫目錄」은 남한에 현존하는 서원은 33곳 중 15곳의 서원에 소장된 1만8054책을 조사·수록하고, 각 책의 간단한 서지사항을 기록한 목록이다. 이 목록에 수록된 서원 중 경상도 성주의 檜淵書院 단 한 곳만 세종 때 간행된 초주갑인자본 「통감훈의」 11책이 소장되어 있었다. 책판목록과 「이조서원문고목록」의 조사 결과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지방 간행과 보급은 거의 없었다.

조선시대 「자치통감」은 간행도 적었고 보급도 많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자치통감」을 읽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에 왕과 신하들이 대화하는 내용이나 상소문을 올리는 글에 「자치통감」에 실린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많이 읽었고 이해도가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간행도 적고 보급도 적었던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의 「자치통감」 수요는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숙종의 아버지 현종은 「자치통감」을 경연에서 많이 강론하게 했던 왕이다. 그런데 「통감훈의」는 효종 때 이미 낙질이 많았고, 숙종 때 가서야 경상도에서 판본을 구하여 무신자로 중간해서 경연에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현종 때 경연에서 사용한 「자치통감」은 조선에서 간행한 「통감훈의」가 될 수 없고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된 서적이 분명하다.

58) 고사촬요 이외에 「통감」 책판이 수록된 책판목록은 9종(冊板置簿冊, 諸道冊板錄, 完營冊板目錄, 芸閣冊都錄, 古冊板有處攷, 各道冊板目錄, 書冊目錄, 慶尙道冊板, 冊板錄)이다. 책판이 보관된 곳은 校書館, 廣州, 安東, 大邱, 醴泉, 靑道, 全州, 完營私板, 順天, 濟州道, 北漢, 南漢 등 11개 지역이다.

5.2 중국·일본본의 수입대체

『자치통감』의 현존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현존본의 상당수가 중국본이고 적지 않은 수의 일본본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서 『자치통감』과 사마광이라는 저자명으로 검색을 실행해서 중복되거나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제외하면 모두 55건의 데이터로 정리된다. 이 중 조선시대 간행된 판본은 19건이며, 이는 현존본 중 35%로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간행이 적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국본은 24건으로 43%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이한 것은 일본본이 12건으로 전체 2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⁵⁹⁾

중국본 『자치통감』은 목판본 16건, 석판본이 3건이고, 활자본은 없다. 송판과 원판의 복각본이 각각 1건씩 있지만, 대부분 천계(天啓) 5년(1625) 호삼성의 『음주』를 명나라 진인석이 평열한 판본으로 10행 20자 계열이다. 조선본보다 판형이 작기 때문에 글씨가 조밀하다. 석판본은 광서 연간인 1888, 1899, 그리고 연대미상 등 3건으로 목판본보다 판형과 글씨가 작다.

일본에서 간행된 『자치통감』은 모두 목판본으로 天保 7년(1836) 간행된 것이 가장 빠르고, 명치 연간인 1800년대 후반의 것이 많다. 18C 초반 간행본들은 중국본과 같은 10행 20자 계열이고, 명치 연간의 것들은 13행 26자와 15행 23자 계열이 있다. 호삼성의 『음주』를 저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인이 重校나 校閱 후 판각하였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중국으로부터 책을 수입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조정에서 사신을 보낼 때마다 명나라에 서책을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서적을 구매하도록 하였다. 또 국가 차원의 수입 이외에 개인적인 서적수입도 일찍부터 있었다. 이는 세종이 사정전훈의를 편찬할 때 조정에는 없었던 호삼성의 『음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여러 지역에 소장되어 있었던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⁶⁰⁾

59) 활발하게 수입되고 기록에 남아 있던 중국본과 달리 일본본의 수입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일본본의 간행연대도 1800년대 후반의 것이 많은데 구한말이나 일제시대에 들어온 것이 현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수입이 많았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자치통감」은 중국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간행을 안 하더라도 중국에서 수입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성종 때 서거정은 「전한서」, 「후한서」, 「통감」 등의 서책은 우리나라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 없더라도 중국에서 구해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역사는 전하는 것이 없으면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마땅히 먼저 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⁶¹⁾

둘째, 간행기록에서 보이듯이 워낙 거질이다 보니 간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많이 찍어 보급하지 못했다. 순암 안정복은 “우리나라에서는 책을 간행하기도 어렵지만 선비가 책을 읽기도 어렵다. 速水(사마광의 호)의 「자치통감」과 考亭(주자의 별호)의 「강목」이 세상에 흔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 권질이 많은 것에 싫증을 느껴 처음부터 감히 입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 더구나 임진왜란 이후로는 서적이 더욱 없어져 버렸다”라고 했다.⁶²⁾ 임진왜란과 양호란 이후 서책보급의 공백을 채워 준 것이 바로 중국본이었다.

셋째, 독서의 편리성이다. 조선시대 간행된 「자치통감」은 활자본으로 글자가 크고 선명하여 가독성이 좋다.⁶³⁾ 반면 책이 크고 무거우며 휴대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중국책은 글씨는 작고 조밀하지만, 크기가 작고 가벼워 다루기 용이하고 휴대하기 편해서 실제 독서용으로 적합했다.

마지막으로 학문의 최신성이다. 조선에서 간행한 「자치통감」은 모두 세종 때 만들어진 사정전훈의로 조선 후기 영조 때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간행이 되었다. 반면 외국에서 간행된 책들은 명·청대의 새로운 사상이나 해석 등 최신 학문의 성과가 반영된 책들이기 때문이다.⁶⁴⁾

60) 세종은 여러 지역으로 관리를 파견하여 「음주」를 모으게 했는데 驪興, 砥平, 晉州道, 永川 등에 낙질이지만 「음주」가 소장되어 있었다(「世宗實錄」 卷67, 17년(1435 乙卯) 3월 5일, 3월 22일, 「世宗實錄」 卷68, 17년(1435 乙卯) 4월 5일).

61) 「成宗實錄」 卷147, 13년(1482 壬寅) 10월 9일 甲戌.

62) 安鼎福, 「順菴先生文集」 권49, 題後 題劉氏刻少微通鑑節要外紀後 丁亥. “東方刊書難. 士又讀書難. 涑水通鑑, 考亭綱目, 世不多有. 而人亦厭其秩多. 初不敢讀. 自宣廟壬亂後. 書籍又湮矣.”

63) 정조는 강목판본의 경우 중국의 것은 글자가 작고 세밀하여 우리나라의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했다(「承政院日記」 正祖 21(1797)년 3월 4일 甲辰).

6. 결 론

이상에서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간행과 유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첫째, 송나라 사마광이 편찬한 『자치통감』은 고려시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조선시대 경연과 서연에서 많이 강론되었고, 유교경전과 함께 역사를 중시하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사대부들에게도 많이 읽혔다.

둘째, 조선시대 최초의 『자치통감』 간행은 우리나라의 독자적 주석인 세종의 사정진훈의가 완료된 직후 인출되어 신하들에게 반사되었다. 5~6백 질의 『통감훈의』를 간행하여 보급하려던 세종의 계획은 목판본에 대한 존재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하지만, 목판본의 간행과 보급에 대해서는 이후 기록이나 현존본이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초주갑인자본 이후 숙종 때 무신자본이 간행될 때까지 현존하는 『자치통감』의 판본이 발견되지 않았다. 세종 때 간행된 『통감훈의』도 전란으로 인하여 궁중에도 단 19책만 남았으나, 숙종 때 경상도에서 간본을 거두어 모자란 부분을 중국본으로 베껴 간행하였고 영조 때도 빠진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넷째, 무신자 『자치통감』은 여러 기관에 수장되어 있는데 장서각본은 권16~18과 권259~261의 2책 6권, 규장각본(奎7529)은 권16 첫 3장이 보사된 것이 확인되었다. 보사된 부분은 숙종실록의 기록과 같이 사정진훈의가 아니라 중국본을 보사해 넣었는데, 보사된 분량으로 미루어 규장각본이 장서각본 뒤에 간행된 것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다른 간본과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도서관에 소장된 무신자본의 권16 부분은 모두 무신자로 인쇄되어 영조 32년 이후 완전히 복원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간행은 활자본 위주였고 보급을 위한 목판본에 대한 기록이 없다. 또 목판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책판목록에는 『통감』이

64) 俞晩柱의 『欽英』을 보면 명나라 말기 竟陵派 鍾惺이 교정한 『자치통감』 48책을 읽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강명관, 『책벌레 조선을 만든다』, (서울: 푸른역사, 2008), 355-356).

수록되어 있는데, 인쇄할 때 사용하는 종이의 수와 책 수를 통해 「자치통감」이 아닌 「통감절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간행과 보급이 적은 것은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수요와 보급의 불균형을 낳고 이것은 「자치통감강목」이나 「통감절요」 같은 축약본의 유행과 중국 등 외국에서 「자치통감」을 수입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여섯째, 「자치통감」과 사마광으로 검색된 55건의 데이터 중 조선시대 간행된 간본은 19건에 불과했다. 이는 현존본 중 35%의 수치로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간행이 적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중국본은 24건으로 43%, 일본본은 12건으로 22%인데, 이것은 조선시대 「자치통감」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본의 수입이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치통감」은 100책에 이르는 거질이다 보니 각각의 소장기관에서 정확하고 세밀한 서지와 내용조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자치통감」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서지와 내용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자치통감」의 축약본으로 조선시대 널리 유행한 「자치통감강목」과 「통감절요」에 대한 복합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조선시대 통감류 역사서에 대한 전체적인 간행과 유통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權重達. “資治通鑑對中韓學術之影響.” 박사학위논문. 국립정치대학중국문학연구소. 1979.

_____. 「옥일승천하는 중국의 힘 자치통감에 있다」. 서울: 푸른역사, 2002.

_____. 「資治通鑑 傳: 해설로 만나는 통감필법」. 서울: 삼화, 2010.

- 김치우.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7.
- 閔斗基. 『중국사 시대구분론』. 서울: 창작과 비평, 1991.
- _____. 『중국의 역사인식(上下)』. 서울: 창작과 비평, 1995.
- 葉德輝 著, 박철상 옮김. 『書林淸話』. 서울: 푸른역사, 2011.
- 신승하. 『중국사학사』. 서울: 고려대학교, 2000.
- 李春熙. 『李朝書院文庫目錄』. 서울: 국회도서관, 1969.
- 錢穆 著, 이은화 옮김. 『전목선생의 사학명저강의』. 서울: 신서원, 2006.
- 鄭亨愚. 『朝鮮朝 書籍文化 研究』. 서울: 九美貿易, 1995.
- 鄭亨愚, 尹炳泰. 『韓國의 冊版目錄(上下)』.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0.
- _____.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2.
- 김윤조.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통감절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양상과 의미.” 『한문학보』 第5輯(2001). 239-264.
- 김일환. “『資治通鑑』과 『資治通鑑綱目』이 朝鮮初期 歷史學에 미친 影響: 世宗 朝를 중심으로.” 『홍익사학』 제5집(1993). 55-88.
- 裴賢淑. “宣祖初 地方 冊板考.” 『서지학연구』 제25집(2003). 299-239.
- 서익환. “사마광의 역사사상과 『자치통감』 편찬.” 석사학위논문. 韓國外國語大 學校 教育大學院. 2011.
- 오향녕. “조선 세종대 『자치통감사정전훈의』와 『자치통감강목사정전훈의』의 편 찬.” 『태동고전연구』 제15집(1998). 27-58.
- _____. “조선 초기 『고려사』 개수에 관한 사학적 검토.” 『태동고전연구』 제16집 (1999). 13-42.
- 이계명. “『資治通鑑』 研究.” 『역사학연구』 제12집(1998). 119-168.
- 이충구. “通鑑流의 收容과 通鑑諺解.” 『泮橋語文研究』 第5輯(2004) 1-26.
- 허태용. “17세기 후반 정통론의 강화와 자치통감절요의 보급.” 『한국사학사학보』 제2집(2000). 5-40.